

국립묘지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(제3조의2 관련)

1. 묘역

- 가. 묘역은 지형·배수·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나. 현충일, 명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다. 묘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(沈砂池: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)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라. 묘역 면적 중 주차장·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마. 묘역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묘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1) 「도로법」 제2조의 도로,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,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 - 2)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
2. 봉안시설

가. 묘

- 1) 묘는 지형·배수·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나. 봉안당

- 1)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.
- 2)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다. 봉안담

- 1) 봉안담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2)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3. 자연장지

가. 자연장지는 지형·배수·토양·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.

나.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다.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공동 분향단,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시설이 갖추어진

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라.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.